

심판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본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연맹 위원회 및 본 연맹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본 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해당 단체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체육회 규정과 본 연맹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내
3.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본 연맹 임원의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지도자, 선수 및 심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특정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본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
되, 위원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사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 회의 의견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맹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임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급 구분) ① 심판 등록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만 22세 이상, 70세 이하인자(현재 대학 재학생 등록불가, 단 스피드 운영심판의 나이는 예외사항으로 둔다.)
2. 당해 연도 국내 심판강습회를 수료한 자
3. 선수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심판 등급 승급 시, 각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격한다.

② T.D.(Technical Delegate/감독관)

1. T.D.는 대회와 관련하여 경기장 및 시설의 상태, 적합성, 안전 및 대회 일정 등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한다.
2.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에는 본 연맹 임원(부회장, 경기 및 심판이사)과 INT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감독관으로 한다.
3. 쇼트트랙 대회에는 본 연맹 임원(부회장, 경기 및 심판이사)과 국제빙상연맹(이하 “ISU”라 한다) 레프리 자격을 갖춘 자를 감독관으로 한다.
4. 피겨 대회에는 본 연맹 임원(부회장, 경기 및 심판이사)과 레프리 자격을 갖춘 자를 감독관으로 한다.

③ 스피드스케이팅 심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활동한다.

1. 국제심판

1) ISU 레프리

가. ISU로 부터 ISU 레프리 자격 획득자

나. ISU에서 지명하는 국제대회에 레프리로 활동할 수 있다.

다.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 경기대회에 레프리 및 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ISU 스타터(출발심판)

가. ISU로 부터 ISU 스타터 자격 획득자

나. ISU에서 지명하는 국제대회 스타터로 활동할 수 있다.

다.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 경기대회에 스타터로 활동 할 수 있다.

3) INTERNATIONAL 레프리

가. ISU로부터 INTERNATIONAL 레프리 자격 획득자

나. ISU에서 지명하는 국제대회에 레프리로 활동할 수 있다.

다.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 경기대회에 레프리 및 감독관으로 활동 할 수 있다.

4) INTERNATIONAL 스타터(출발심판)

가. ISU로부터 INTERNATIONAL 스타터 자격 획득자

나. ISU에서 지명하는 국제대회 스타터로 활동할 수 있다.

다.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 경기대회에 스타터로 활동 할 수 있다.

2. 국내심판

1) 공통사항

가. 만 22세 이상(대학교 재학생 제외)으로 운영심판은 만 75세까지 레프리 및 스타터는 만 70세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나. 심판은 레프리, 스타터(출발심판), 운영심판으로 구분한다.

다. 각 포지션 별 수습기간을 거쳐야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라. 운영심판 중 레프리 또는 스타터(출발심판)로 포지션 변경 시, 신규 자격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최초 심판 급수는 삭제되며 실습→3급→2급→1급 순차적 승격)

마. 한 시즌 이상 활동이 불가할 시 그 사유를 심판위원회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레프리

가. ISU로부터 국제심판 이상 자격을 획득한 자

나. 신규 레프리 자격 조건은 다음에 의한다.

(1) 선수 또는 지도자 출신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

(2) 2급 운영심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고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 매년 7회 이상 참여한 자

(3) 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평가서와 보고서에 문제가 없는 자

(4)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 심판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실습심판 및 포지션 변경 후 당해 연도 레프리는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서 레프리 보조로 활동 수 있다.

라. 2급과 3급 레프리는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서 어시스턴트 레프리로 활동 할 수 있다.

마. 1급 레프리(국제심판)는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서 레프리 로 활동 할 수 있다.

3) 스타터

가. ISU로부터 국제심판 이상 자격을 획득한 자

나. 신규 스타터 자격 조건은 다음에 의한다.

(1) 선수 또는 지도자 출신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증명서 제출)

(2) 2급 운영심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고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 매년 7회 이상 참여한 자

(3) 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평가서와 보고서에 문제가 없는 자

(4)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 심판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 모든 국내대회에서 스타터로 활동할 수 있다.

라. 실습심판 및 포지션 변경 후 당해 연도 스타터는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서 스타터 보조로 활동 할 수 있다.

마. 2급과 3급 스타터는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서 어시스턴트 스타터로 활동 할 수 있다.

바. 1급 스타터는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 스타터로 활동 할 수 있다.

4) 운영심판

가. 운영심판에는 시설, 회수, 수동계시, 기록, 착순, 소집, 자동계시, 코너심판, 직선심판, 트랙 교차심판이 해당된다.

나. 수습 운영심판은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서 운영심판 보조로 활동한다.

다. 1급 운영심판은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 해당부서 책임부장으로 활동 할 수 있다.

3. 스피드스케이팅 심판 승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한 시즌은 심판강습회 개최년도 본 연맹 주최 첫 대회부터 마지막 대회까지를 의미한다.

나. 수습심판은 최초 심판강습회 수료자를 칭하며, 국내대회 5회 참여와 대회종료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수습, 실습(레프리 및 스타터만 적용), 3급, 2급, 1급 순으로 급수를 적용한다.

라. 운영심판은 선수경력 5년 이상 또는 지도자 경력 5년 이상인 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2급으로 승급 할 수 있다.(증명서 제출)

마. 국제심판에서 제외된 자는 국내심판 1급에 준한다.

바. 심판 승급은 시즌 종료 후 심판위원회에서 심의 및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레프리 및 스타터

가. 수습심판(승격기준 공통사항 참조)

나. 실습심판

(1) 신규 자격조건 충족자 및 당해 연도 포지션 변경 자격조건 충족자(최초 심판급수는 삭제되며 레프리 및 스타터 승격기준에 따름)

(2) 한 시즌 5회 이상 현장실습(보조) 참여

다. 3급 심판

- (1) 실습심판 종료 후 보고서 제출(레프리는 레프리 보고서 양식)
- (2) 실습심판으로 한 시즌 동안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 5회 이상(레프리 및 스타터 보조) 참가한 자
- (3)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자

라. 2급 심판

- (1) 아래 (2)항과 (3)항을 충족한 자
- (2) 매년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 6회 이상 참가한 자
- (3) 3급 심판으로 두 시즌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 (4)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

마. 1급 심판

- (1) 아래 (2)항과 (3)항을 충족한 자
- (2) 매년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 7회 이상 참가한 자
- (3) 2급 심판으로 세 시즌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 (4) 심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 (5) ISU INTERNATIONAL급 이상 심판은 국내심판 1급에 준한다.
- (6) 국제심판에서 탈락한 자는 국내심판 1급에 준한다.

3) 운영심판

가. 수습심판(승격기준 공통사항 참조)

나. 3급 심판

- (1) 수습심판으로 한 시즌 동안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에 5회 이상 참가하여 각 대회 수습심판 보고서를 제출한 자

다. 2급 심판

- (1) 아래 (2)항과 (3)항을 충족한 자
- (2) 매년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 6회 이상 참가한 자

(3) 3급 심판으로 두 시즌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4)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

라. 1급 심판

(1) 아래 (2)항 또는 (3)항을 충족하는 자

(2) 매년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 7회 이상 참가한 자

(3) 2급 심판으로 세 시즌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4)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

4) 스피드 심판 승급은 매년 심판강습회 종료 후 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INTERNATIONAL 국제심판 신규 추천기준

1) 레프리는 만 55세 이하, 스타터는 만 50세 이하인 자

2) 1급 심판으로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에 연속적으로 세 시즌 이상 각 시즌별 8회 이상 활동한 자 중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3) 영어에 능통한 자

5. ISU 국제심판 신규 추천 기준

1) INTERNATIONAL 심판으로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에 연속적으로 세 시즌 이상 각 시즌 별 8회 이상 활동한 자 중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

2) 레프리는 만 55세 이하, 스타터는 만 50세 이하인 자

6. 국제심판(ISU INTERNATIONAL) 자격 상실

1) ISU에서 국제심판의 자격상실을 통보받은 자

2)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활동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

3) 세 시즌 이상 국내심판 활동 및 국내 심판 강습회 불참석 시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상실

7. 스피드스케이팅 국내심판 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ISU 규정을 준수한다.

④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심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활동 한다.

1.국제심판

1) ISU 레프리(심판)

가. ISU로 부터 ISU 레프리 자격 획득자

나. ISU에서 지명하는 국제대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 심판 및 심판장으로 활동 할 수 있다.

2) ISU 스타터(출발 심판)

가. ISU로 부터 ISU 스타터 자격 획득자

나. ISU에서 지명하는 국제대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 스타터로 활동 할 수 있다.

3) ISU 컴페티터 스텐워드(조편성 심판)

가. ISU으로 부터 ISU 컴페티터 스텐워드(조편성 심판)자격 획득자

나. ISU에서 지명하는 국제대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 조 편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4) INTERNATIONAL 레프리(심판장)

가. ISU로부터 INTERNATIONAL 레프리 자격 획득자

나. ISU에서 지명하는 국제대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 심판 및 심판장으로 활동 할 수 있다.

5) INTERNATIONAL 스타터(출발 심판)

가. ISU으로부터 INTERNATIONAL 스타터 자격 획득자

나. ISU에서 지명하는 국제대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 스타터로 활동 할 수 있다.

6) INTERNATIONAL 컴페티터 스템워드 (조편성 심판)

가. ISU로부터 INTERNATIONAL 컴페티터 스템워드(조편성 심판)자격 획득자

나. ISU에서 지명하는 국제대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대회에 조편성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7) 국제심판(INTERNATIONAL 심판 이상) 추천 기준

가. 1급 심판 보유자 중 지속적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는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나. ISU 국제심판 추천 자격에 부합하는 자

다. 한 시즌 최소 1회 활동하지 않은 심판은 차기 시즌 국제심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국내심판

1) 공통사항

가. 심판은 레프리, 스타터, 조편성원을 칭한다.

나. 빙상 국내대회 경기실적이 있는 자 중 본 연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판 자격 취득한 자이다.(해당년도 심판으로 등록 및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년도 지도자 강습회 수료 및 지도자로 연맹 사업에 참가가 불가함)

다. 인정되는 사유 없이 두 시즌 이상 심판 활동을 하지 않은 자는 활동하고자 하는 시즌에 최소 2경기 이상 참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라. 레프리 및 스타터에 한하여 포지션 변경에 따른 급수를 인정하며 중복 활동이 가능하다.

2) 수습심판

가. 최초 심판강습회 수료자

나. 최초 심판강습회 수료 후 국내대회 3회 참관과 대회종료 후 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승급이 가능하다.

다. 대회 분리 개최 시 2일 참석 시 1회 참석인정, 4일 이상 참석 시 2회 참석으로 인정한다.

3) 3급 심판

가. 본 연맹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국내대회 3회 이상 참관하여 모든 경기 관람 후 보고서 제출자로 심판위원회를 거쳐 승급된 자

나. 동호인대회 및 시·도 대회에서 해당심판은 어시스턴트로 활동이 가능하다.

4) 2급 심판

가. 해당 등급 기간 중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 8회 이상 활동한 자

나. 해당 등급 기간 중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 6회 이상 또는 그 외 국내대회 참관 후 보고서 2회 이상 제출자

다. 해당심판은 어시스턴트 이상으로 활동 가능

4) 1급 심판

가. 해당 등급 기간 중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 10회 이상 활동한 자

나. 해당 등급 기간 중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 8회 이상 또는 그 외 국내대회 참관 후 보고서 2회 이상 제출자

다. 해당심판은 어시스턴트 이상 활동 가능

3. 운영심판

1) 운영심판의 자격 및 활동 조건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본 연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운영 심판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운영 심판에는 회수산정, 계시, 착순, 시설, 소집, 전산 심판이 해당 될 수 있다

다. 본 연맹에서 지명하는 모든 국내경기대회에 운영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라. 본 연맹 주관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운영심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4. 쇼트트랙 심판 승격 기준

1) 쇼트트랙 심판 승격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가. 1년은 1시즌 (심판 강습회 후 본 연맹 주최 첫 대회부터 마지막 대회까지)을 의미한다.

나. 국가대표 선수경력 1년 이상 또는 국가대표 코치경력 1년 이상인 자는 수습기간을 거쳐 2급부터 활동 가능

다. 쇼트트랙 심판 최소 승격 기간

현재심판자격 \ 자격구분	수습	3급	2급	1급
심판경력	1년(이내)	1년	2년	3년

⑤ 피겨스케이팅 심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활동한다.

1. 공통사항

가. 1년은 한 시즌(심판강습회 후 본 연맹 주최 첫 대회부터 마지막대회까지 : 7월 ~ 이듬해 6월)을 의미한다.

나. 선수경력은 본 연맹에서 주최한 전국규모대회에 참가기록과 점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 대회 출석일수와 관련하여 직계 존속 4촌 이내 경조사 또는 전치 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경우, 위원회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한해 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쳐 대체가 가능하다.

2. 레프리

1) 신규 레프리(국내)의 승격 조건은 다음에 의한다.

가. 피겨 국제심판 자격으로 3년 ~ 7년 이상 피겨 선수 경력(제3장 제14조 4항 1호 공통사항 나)과 7-8급인 자는 3년 이상, 5-6급인 자는 5년 이상, 1-4급인 자는 7년 이상 활동한 자

나. 매 시즌 대회일수의 60% 이상 대회에 참석한자

다. 트라이얼 레프리로 1년 이상 대회에 참석한 자

라. 레프리 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자

마. ISU 특별규정과 기술규정, 통신문 및 국내 규정과 관련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한 자

바.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든 국내대회에서 심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3) 레프리로 활동한 대회의 레프리 보고서를 경기 종료 후 2주 이내에 연맹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레프리 활동을 제한 받을 수 있다.

4) 국제 레프리(INTERNATIONAL 레프리 이상)는 ISU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승급 신청한다.

5) 승급 신청은 매년 4월 10일 이전에 연맹에 통보한다.

3. 국제심판

1) ISU로부터 국제심판 자격 획득자 (INTERNATIONAL 심판 이상)

2) 1급 심판에서 국제심판으로 승격조건은 다음에 의한다.

가. 피겨 선수 경력(제3장 제14조 4항 1호 공통사항 나)이 5-8급인 자는 3년 이상, 1-4급인 자는 5년 이상 1급 심판으로 활동한 자.

나. 매 시즌 대회일수의 60% 이상 대회에 참석한자

다. 레프리 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자

라. ISU 규정을 준수하며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모든 국내대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4) 국제심판은 국내대회 참가가 60% 미만일 경우 다음 시즌 국제심판 등재 시 제외 될 수 있다.

5) 승급 신청은 매년 4월 10일 이전에 연맹에 통보한다.

4. 1급 심판

1) 2급 심판에서 1급 심판으로 승격조건은 다음에 의한다.

가. 피겨 선수 경력(제3장 제14조 4항 1호 공통사항 나)이 7-8급인 자는 2년 이상, 1-4급인 자는 4년 이상 2급 심판으로 활동 한 자

나. 상기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1급 심판으로 승격될 수 없다.

다.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국내대회(꿈나무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별선수권대회)에 심판으로 필수 활동(노비스 선수 이하 부문)하고 매 시즌 전체 대회(트라이얼 포함) 일수의 60% 이상 대회에 참석한 자

라. 매 시즌 5급 이상 피겨 승급 심사(본 연맹 주최)를 1회 이상 트라이얼 심판으로 활동한 자

마. 레프리 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자

바. ISU 특별규정과 기술규정, 통신문 및 국내 규정과 관련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한 자

사.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매 시즌 모든 급수의 선수들이 출전한 국내대회에서 심판활동을 할 수 있다.

3) 승급 신청은 매년 4월 10일 이전에 연맹에 통보한다.

5. 2급 심판

1) 트라이얼 심판에서 2급 심판으로 승격조건은 다음에 의한다.

가. 피겨 선수 경력(제3장 제14조 4항 1호 공통사항 나)이 5-8급인 자는 1년 이상, 1-4급인 자는 2년 이상 트라이얼 심판으로 활동한 자

나. 상기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3년 이상 트라이얼 심판으로 활동해야 한다.

다. 매 시즌 대회일수의 60% 이상 대회에 참석한 자

라. 매 시즌 초급-4급 승급심사(전국 시·도연맹 주최)에 2회 이상 트라이얼 심판으로 활동 한 자

마. 레프리 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자

바. ISU 특별규정과 기술규정, 통신문 및 국내 규정과 관련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한 자

사.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4급 이하의 선수들이 출전한 국내대회에서 심판활동을 할 수 있다.

3) 승급신청은 매년 4월 10일 이전에 연맹에 통보한다.

6. 트라이얼(Trial) 심판

1) 트라이얼 심판의 자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연령 만 23세 이상인 자

나. 싱글 1급 이상인 자

다. 심판등록 시 선수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트라이얼 심판은 정식 심판이 아니므로 심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3) 현역선수 및 코치는 불가하나 코치를 은퇴한 경우는 가능하다.

4) 승급 신청은 매년 4월 10일 이전에 연맹에 통보한다.

7. 테크니컬 컨트롤러

1) 국내 테크니컬 컨트롤러에서 국제 테크니컬 컨트롤러(INTERNATIONAL 컨트롤러 이상)로 신청은 다음에 의한다.

가. 매 시즌 대회일수 60% 이상 참석한 자

나. 3년 동안 국내 테크니컬 컨트롤러로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 한 자

다. ISU 규정을 준수하며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신규 테크니컬 컨트롤러(국내)의 자격 조건은 다음에 의한다.

가. 만 30세 이상인 자

나.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다. 국제심판 이상이며 국내 레프리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라. 관련 분야의 기술 부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마. 5급 이상의 피겨 선수경력(제3장 제14조 4항 1호 공통사항 나)이 있는 자

바. 본 연맹의 기술 심판(테크니컬 패널) 강습회를 수료한 자

사. 트라이얼 테크니컬 컨트롤러로 1년 이상 활동하고, ISU 특별 규정과 기술 규정, 테크니컬 핸드북, 통신문 및 국내 규정과 관련하여 필기 및 실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한 자

아. 매 시즌 대회일수의 60% 이상 참석한 자

자. 페어, 아이스댄스, 싱크로나이즈드 종목의 테크니컬 컨트롤러 신청자는 별도의 심판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8.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1) 국내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에서 국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INTERNATIONAL 스페셜 리스트 이상)로 신청은 다음에 의한다.

가. 매 시즌 대회일수의 60% 이상 참석한 자

나. 3년 동안 국내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한 자

다. 컨트롤러 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자

라. ISU 규정을 준수하며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트라이얼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에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국내)로 승격 조건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본 연맹의 기술 심판(테크니컬 패널) 강습회를 수료한 자

나. 트라이얼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1년 이상 대회에 활동한 자

다. ISU 특별규정과 기술규정, 테크니컬 핸드북, 통신문 및 국내규정과 관련하여 필기 및 실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한 자

라. 컨트롤러 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자

마. 매 시즌 대회일수의 60% 이상 참석한 자

바. 페어, 아이스댄스, 싱크로나이즈드 종목의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신청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은 심판 및 레프리는 국내에서 두 가지

활동을 겸할 수 없다.

4) 승급 신청은 매년 4월 10일 이전에 연맹에 통보한다.

9. 트라이얼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1) 트라이얼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의 자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코치, 심판, 레프리로 활동하는 자 또는 선수 생활을 은퇴한 자

나. 관련 분야의 기술 부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다. 5급 이상의 피겨 선수경력(제3장 제14조 4항 1호 공통사항 나)이 있는 자

라. 본 연맹의 기술 심판(테크니컬 패널) 강습회를 수료한 자

마. 신청 후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바. 페어, 아이스댄스, 싱크로나이즈드 종목의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신청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트라이얼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는 정식 심판이 아니므로 심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시즌 대회일수의 60% 이상 참석해야 한다.

4) 대회 참석 시, 담당 컨트롤러와 기술 규정을 확인한다.

5) 1년 이상의 트라이얼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활동 후 국내 테크니컬 패널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6) 승급 신청은 매년 4월 10일 이전에 연맹에 통보한다.

10.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Data/Replay Operator)

1) 국내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에서 국제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INTERNATIONAL 오퍼레이터 이상)로 신청은 다음에 의한다.

가. 매 시즌 대회일수의 60% 이상 대회에 참석한 자

나. 3년 이상 국내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로 활동한 자

다. 컨트롤러 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자

라. ISU 규정을 준수하며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신규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국내)는 다음에 의한다.

- 가. 트라이얼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로 1년 이상 대회에 참석한 자
- 나.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다. 시즌 대회일수의 60% 이상 대회에 참석한 자

3) 승급 신청은 매년 4월 10일 이전에 연맹에 통보한다.

11. 트라이얼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Trial Data/Replay Operator)

1) 트라이얼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의 자격은 다음에 의한다.

- 가. 피겨스케이팅 분야의 기술 부문에 풍부한 지식이 있는 자
- 나. 컴퓨터 활용 능력 및 비디오 조작에 능한 자
- 다. 국내 기술심판(테크니컬 패널) 강습회를 수료한 자
- 라. 신청 후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12. 피겨 심판의 최소 승격 기간

1) 심판

현재심판자격 자격구분	트라이얼	2급	1급	국제심판	레프리
선수경력 7-8급	1년	2년	3년	3년	자격
선수경력 5-6급	1년	3년	3년	5년	자격
선수경력 1-4 급	2년	4년	5년	7년	자격
상기에 해당되지 않은자	3년	자격	-	-	-

2) 기술심판

현재심판자격 자격구분	트라이얼	국내	국제
테크니컬 컨트롤러	1년	3년	자격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1년	3년	자격
데이터/리플레이 오퍼레이터	1년	3년	자격

⑥ 국제심판 구분

구분	내 용
스 피 드	1 I.S.U. CHAMPIONSHIPS REFEREE 2 INTERNATIONAL COMPETITION REFEREE 3 I.S.U. STARTER 4 INTERNATIONAL STARTER
쇼트트랙	1 I.S.U. CHAMPIONSHIPS REFEREE 2 INTERNATIONAL COMPETITION REFEREE 3 I.S.U. STARTER 4 INTERNATIONAL STARTER 5 I.S.U. COMPETITOR STEWARD 6 INTERNATIONAL COMPETITOR STEWARD
피 겨	1 I.S.U. REFEREE 2 I.S.U. JUDGE 3 INTERNATIONAL REFEREE 4 INTERNATIONAL JUDGE 5 ISU TECHNICAL CONTROLLER 6 ISU TECHNICAL SPECIALIST 7 INTERNATIONAL TECHNICAL CONTROLLER 8 INTERNATIONAL TECHNICAL SPECIALIST 9 ISU DATA/VIDEO OPERATOR 10 INTERNATIONAL DATA/REPLAY OPERATOR

제15조(심판등록 결격사유) 삭제 <2021.12.16.>

제16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심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본 연맹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드웁한 심판의 자격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 연맹의 심의를 거쳐 심판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등록 취소는 경기인등록규정 제37조에 따른다.

제17조(자격의 취득) 최초 심판 자격 취득은 심판강습회를 통한 소정의 교육 또는

시험을 거쳐,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승인 후 회장이 임명한다. 단, 심판의 승급은 해당종목 세부 승급기준을 따른다.

제18조(승급 및 자격상실) ① 심판의 승급을 위한 자격취득은 제14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승인 후 회장이 임명한다.

② 매년도 시즌 종료 후 각 심판의 당해 연도 활동실적을 근거로 자격상실 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 후 회장이 결정한다.

제19조(자격의 부활) 심판자격을 상실한 자가 심판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제15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 후 회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권리) ①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기대회의 심판으로 임명 받을 수 있다.

② 국제심판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에 추천받을 수 있다.

③ 국제심판은 국제대회에 국제연맹 지명 시 추천에 파견된다.

④ 심판의 판정은 절대적이다.

⑤ 각급 심판은 소정의 대회 심판수당을 지급 받는다.

제21조(의무) ① 심판은 경기규칙을 절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공명정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심판장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④ 심판은 소집된 심판회의 및 심판강습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⑤ 심판으로 선정된 자가 부득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회 최소 2일 전까지 불참사유를 본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 대회에 임명된 T.D.와 레프리는 각각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에 의거, 대회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판 배정 후 무단 불참 시 심판은 차기 심판배정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신분증명서발급) 본 연맹 소속 각급 심판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심판 자격을 명시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심판 신분증은 심판에 임할 때나 강습회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본 연맹 주최 측에 제시하여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23조(국제심판 등재 추천심판) 1급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로 3개 종목의 추천 기준에 따른다.

제24조(심판의 연령제한)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한 제한은 ISU 규정에 따른다. 단 상임심판의 경우 대한체육회 상임심판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5조(정보제공)

① 체육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요청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심판 양성 교육

제26조(교육실시) ① 본 연맹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

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본 연맹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심판 평가 및 배정

제27조(심판평가) ① 본 연맹은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은 상임심판, 본 연맹에 등록하여 당해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본 연맹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과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은 종목별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등록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 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28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본 연맹은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본 연맹 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병상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심판배정) ① 본 연맹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의 심판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1.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2.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심화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3.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제30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관련 규정과 연맹 정관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당해 단체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본 연맹은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 대회 시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가 있다.
-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ISU 및 본 연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체육회 또는 본 연맹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 ② 심판은 본 연맹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심판은 본연맹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본 연맹 및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32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 할 수 있다.

제33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본 연맹 및 체육회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본 연맹은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심판매뉴얼) 본 연맹은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2014. 5.2)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본 연맹 심판규정은 폐지되고 이규정으로 대체되며 이전에 시행된 심판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거 수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5. 1.2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5. 7.1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8.1.1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21.12.16.)로부터 시행한다.